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89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김은혜・김승수・이종욱
정성국・최수진・김선교
김기현・김미애・김정재
조배숙・강대식・이양수
김소희・엄태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바 있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파렴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여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하는 동시에 확정판결이 늦어져 소송 당사자들의 고통은 끝없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현행법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진 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권리구제 비용과 시간을 가중시킬 우려도 함께 상존함.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가처분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며,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중대한 문제점을 긴급히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탁금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목적에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행사 또는”을 “행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7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심판비용 등) ① · ② (생 략)	제37조(심판비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의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탁금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목적에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행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 또는----------.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1조의2(가처분) ---------- ---------- ---------- ---------- ---------- ---------- ----------.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